



제 417회 국회 (임시회)
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
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

〈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」의 제출과 연계한
수산조정위원회 기능 확대 등〉
■ 정부 제출(의안번호 제2201135호)

2024. 8.
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전문위원 최 선 영

목 차

I. 제안경위	1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. 검토의견	3
1. 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」 제정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 기능 확대	3
2. 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」 제정에 따른 조업상황 보고 및 과태료 규정 정비	6
[참고자료]	11

I. 제안경위

1. 제 출 자 : 정부 제출
2. 제 출 일 : 2024. 6. 28.
3. 회 부 일 : 2024. 7. 1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」의 제정으로 연근해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와 어획물운반업자에 대한 어획실적 및 전채실적 보고 의무와 그 보고의무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사항이 해당 법에 규정됨에 따라, 이 법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필요한 어획실적 등의 자료는 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」에 따라 구축되는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, 이 법을 위반하여 어획실적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폐지함으로써 동일한 보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중복하여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,

중앙수산조정위원회와 시·도수산조정위원회에서 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」에서 정하는 사항을 각각 심의할 수 있도록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확대하려는 것임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」(의안번호 제113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Ⅲ. 검토의견

1. 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」 제정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 기능 확대

가. 개정안의 개요

□ 개정안은 「수산업법」(이하에서 “현행법”이라 함) 제96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와 시·도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에 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」(이하에서 “연근해어업발전법”이라 함)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를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96조).¹⁾

[표] 개정안 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96조(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) ①	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96조(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) ①	-----	-----
1. ~ 6. (생략)		1. ~ 6. (현행과 같음)		
7. 그 밖에 이 법, 「수산자원관리법」, 「어장관리법」, 「양식산업발전법」 및 「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		7. -----	----- 「양식산업발전법」, 「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」-----	
② 시·도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특별자치도의 경우 시·도수산조정위		② -----	-----	-----

1) 본 개정안은 함께 제출되는 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」(의안번호 제113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함.

원회가 시·군·구수산조정위원회 회의 기능도 수행한다. 1. ~ 7. (생략) 8. 그 밖에 이 법, 「수산자원관리 법」, 「어장관리법」, 「양식산 업발전법」 및 「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 률」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③ ~ ⑤ (생략)	----- -----. 1. ~ 7. (현행과 같음) 8. ----- ----- 「양식산 업발전법」, 「연근해어업의 구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 전법」----- ③ ~ ⑤ (현행과 같음)
--	---

나. 검토의견

- 현행법²⁾은 어업에 관한 조정·보상·재결 또는 양식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중앙수산조정위원회를, 시·도 및 시·군·자치구에 시·도수산조정위원회 등을 두도록 하면서 중앙수산조정위원회와 시·도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의 하나로 각각 이 법, 「어장관리법」, 「양식산업발전법」 및 「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를 규정하고 있음.

2) 「수산업법」 제95조(수산조정위원회의 설치) 어업에 관한 조정·보상·재결 또는 양식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중앙수산조정위원회를, 시·도 및 시·군·자치구에 시·도수산조정위원회 및 시·군·구수산조정위원회를 각각 둔다.

제96조(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) ①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~ 6. (생략)

7. 그 밖에 이 법, 「어장관리법」, 「양식산업발전법」 및 「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

② 시·도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특별자치도의 경우 시·도수산조정위원회가 시·군·구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도 수행한다.

1. ~ 7. (생략)

8. 그 밖에 이 법, 「어장관리법」, 「양식산업발전법」 및 「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

수산조정위원회 운영 현황은 참고자료 참조

개정안은 ‘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」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’를 각 위원회의 기능에 추가하려는 것으로

이는 동 법안과 함께 제출된 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」³⁾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불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의 경우 「수산업법」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, 시·도지사가 수립하는 시·도시행계획의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시·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⁴⁾하고 있음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, 필요한 입법 조치인 것으로 보임.

[현행법 및 개정안 비교]

구분	현행법	개정안
중앙/시·도수산 조정위원회 심의사항	「어장관리법」, 「양식산업발전법」 및 「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사항	「어장관리법」, 「양식산업발전법」 및 「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사항 + <u>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」에서 정하는 사항</u>

3) 동 개정안은 동 개정안과 함께 제출되는 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」(의안번호 제 25691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음.

4) 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」 제5조(불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)

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불법어업등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불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·③ (생 략)

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을 거친 후 「수산업법」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.

제6조(불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시·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불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(이하 “시·도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·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직전 연도 시·도시행계획의 추진 성과 및 평가
2. 기본계획의 해당 연도 시행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
3. 해당 연도의 추진 목표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·③ (생 략)구청장(이하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이라 한다)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④ 시·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을 거친 후 「수산업법」 제95조에 따른 시·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·도시행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.

2. 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」 제정에 따른 조업상황 보고 및 과태료 규정 정비(안 제104조 및 제112조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개정안은 현행법 제104조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를 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」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,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규정되어 있는 조업상황·어획실적·전재량 관련 보고의무 및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(안 제104조제2항, 제112조제4항)

[표] 개정안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04조(수산데이터베이스의 구축) ① (생략) ②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제51조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조업상황·어획실적·전재량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. ③ (생략)	제104조(수산데이터베이스의 구축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는 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」 제18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.
제112조(과태료) ① ~ ③ (생략)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	제112조(과태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

태료를 부과한다. 1. ~ 10. (생략) <u>11. 제104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한 자</u> ⑤ (생략)	-----. 1. ~ 10. (현행과 같음) <u><삭제></u> ⑤ (현행과 같음)
--	--

나. 검토의견

- 현행법⁵⁾은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는 수산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조업상황·어획실적·전재량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(제104조제2항),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(제112조제4항).
- 그런데 동 법안과 함께 제출된 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」은 연근해어업자 등에게 조업일마다 조업시간·조업횟수 및 어종별 어획량 등에 관한 어획실적과 전재(轉載)실적 및 양륙실적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⁶⁾하도록 하고, 이를 위반하여 해당 보고를 하지

5) 「수산업」 제104조(수산데이터베이스의 구축) ②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제51조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조업상황·어획실적·전재량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12조(과태료)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1. 제104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

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38조(배분량의 관리) ④ 제37조에 따라 할당된 배분량에 따라 수산자원을 포획·채취하는 자는 어획량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제67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3.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

6) 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」 제9조(어획실적 및 전재실적의 보고 등) ① 연근해어업자는 조업을 할 때 해당 조업일마다 어획실적과 전재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제112조(과태료)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, 이러한 보고실적을 통합해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-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를 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」 제18조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, 현행법상의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규정되어 있는 어업인 등의 조업상황·어획실적·전재량 등 보고의무와 이를 위반할 경우의 과태료(100만원 이하)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, 이를 통해 이 법에 따른 조업상황·어획실적·전재량 등 보고에 있어 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」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,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법에 따라 강화된 과태료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됨.

[어획실적 보고 등 위반에 대한 제재 비교]

구분	현 행	제(개)정안
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	-	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수산업법	100만원 이하의 과태료	삭제

- 현행법상 수산데이터베이스는 해양수산부에서 자체 조사하는 수산자원 분포현황 등 조사결과와 어업인으로부터 제출받는 조업상황·어획실적 등 자료로 구성되는데,

개정안에 따라 변동되는 것은 이 중 어업인으로부터 제출받는 조업상

11. 제104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

황·어획실적 자료로, 이는 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」의 통합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는 어획·전재·양륙실적 보고자료의 활용을 통해 대체 가능하므로 개정안에서 어업인 등의 조업상황·어획실적 보고의무를 삭제하여도 수산데이터베이스의 기능 및 내용에는 변화가 없다고 해양수산부에서 설명하고 있고,

또한 현행 「수산업법」 제104조의 보고의무자보다 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」에 따른 어획실적 등 보고의무자의 범위가 넓으므로, 현행법상 보고의무 규정과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여도 데이터베이스의 운영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보여짐.

[수산데이터베이스의 개정 전후 비교]

구 분	개정 前	개정 後
데이터베이스 내용 (제104조 제1항)	업종별·수역별 조업상황, 어획실적, 수산자원 분포현황 등	현행과 동일
데이터 취득 방법 (제104조 제2항)	1) 어업자 등의 보고로 취득 ① 조업 상황* ② 어획 실적 ③ 전재량 보고 *조업상황: 어선명·어선번호·업종·어선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·조업일·조업 수역·조업 횟수·어종·어획량	※「수산업법」상 어업자 등의 보고의무는 삭제 1) 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」 제18조의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취득 ① 연근해어업 면허·허가 및 어선 현황 ②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현황 ③ 어획 실적 및 전재 실적 ④ 양륙실적 ⑤ 어획확인서·어획증명서 발급 현황
	2) 정부의 수산자원 조사·평가로 취득(수산자원관리법 제10조)	현행과 동일

[수산업법 및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의 보고의무자 비교]

구 분	수산업법	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
어획 실적 등 보고 의무자	근해어업, 연안어업, 구획어업, 한시어업 등 어업허가를 받은 자 (수산업법 제40조 및 제43조)	근해어업, 연안어업, 구획어업, 한시어업 등 어업허가를 받은 자 + 정치망어업 (수산업법 제7조)
전재실적 보고 의무자	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 (수산업법 제51조)	어획물운반업자

문 의 처

02)6788-5422

참고

수산조정위원회 현황

□ 수산조정위원회 현황

- (위원회 성격) 자문위원회
- (목적) 어업에 관한 조정·보상·재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
- (법적 근거) 「수산업법」 제95조(수산조정위원회의 설치)
- (설치 연도) 1963년(「수산업법」에 수산심의위원회 설치 조문 신설)
- (위원장/위원수) 해양수산부 차관/19명
- (시·도, 시·군 위원회/어업조정위원회) 지자체별/동·서·남해

□ 중앙수산조정위원회 기능

- ① 어업별 분쟁의 조정
 - ② 시·도 사이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
 - ③ 기본계획의 심의
 - ④ 선복량 제한의 심의
 - ⑤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
 -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자문에 관한 응답
 - ⑦ 그 밖에 「수산업법」, 「어장관리법」, 「양식산업발전법」, 「연근해 어업 구조개선법」 및 「수산자원관리법」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
- (수산업법) 시·도 간 조업수역의 조정, 어구 규모 제한을 별도 적용,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 계획 수립, 시·도 연안자원관리 승인신청 등
- (어장관리법) 어장관리 기본계획 수립, 어장관리해역 지정
- (양식산업발전법) 별도 조문 없음
- (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) 기본계획·시행계획 수립, 직권감척 어업, 대상자 지정
- (수산자원관리법) 기본계획·시행계획 수립, 어업자협약 승인, 총허용어획량 설정
(‘24.5.1 시행예정)

□ 시·도 수산조정위원회 기능

- ① 어업에 관한 손실보상이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삼우卜·조정

- ② 시·군·자치구 사이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
- ③ 한시어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의 심의
- ④ 시행계획의 심의
- ⑤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관한 내용의 심의
- ⑥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
- ⑦ 시·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자문에 관한 응답
- ⑧ 그 밖에 「수산업법」, 「어장관리법」, 「양식산업발전법」, 「연근해 어업 구조개선법」 및 「수산자원관리법」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
 (수산업법) 시·도 연안자원관리, 입어에 관한 재결, 어장구역 등에 관한 재결 등
 (어장관리법) 어장관리 시행계획 수립, 면허·허가동시갱신을 위한 심의 등
 (양식산업발전법)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수립, 어촌계 등 면허 특례 적용
 (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) 시행계획 수립, 직권감척 어업, 대상자 지정
 (수산자원관리법) 시행계획 수립, 어업자협약 승인, 총허용어획량 설정(24.5.1 시행예정)